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26. 2.

제 안 자 : 법제사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연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 경과	
1	455	곽규택의원 등 15인	2024.06.13.	상정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4.08.23.)
				소위 심사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01.21.)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02.03.)
2	1019	전재수의원 등 11인	2024.06.27.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2024.09.23.)
				소위 심사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01.21.)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02.03.)
3	10175	박찬대의원 등 11인	2025.04.28.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5.11.26.)
				소위 심사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01.21.)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02.03.)
4	10426	배준영의원 등 13인	2025.05.08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6.01.20.)
				소위 심사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01.21.)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02.03.)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2.3.)는 위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2026.2.4.)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책임제한사건 및 관련 사건의 관할을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법률 제 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법원의”를 “해사국제상사법원의”로 한다.

제3조 중 “법원이나”를 “해사국제상사법원이나”로, “관할 법원”을 “관할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법원에”를 “해사국제상사법원에”로 한다.

제2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책임제한사건이 계속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30조제2항 중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담보권의 목적이 되는 재산 소재지의 법원의 관할에”를 “책임제한사건이 계속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

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책임제한사건의 관할) 책임제한사건은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이하 “제한채권”이라 한다)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船籍) 소재지, 신청인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소재지, 사고 발생지, 사고 후에 사고선박이 최초로 도달한 곳 또는 제한채권에 의하여 신청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집행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專屬)한다.	제2조(책임제한사건의 관할)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제3조(책임제한사건의 이송)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책임제한사건을 다른 관할 법원이나 제한채권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관할 법원 또는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책임제한사건이 계속(係屬)하는 법원에 이송(移	제3조(책임제한사건의 이송) ----------해사국제상사법원이나----------관할 해사국제상사법원----------

送)할 수 있다.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제29조(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 ①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29조(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책임제한사건이 계속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30조(담보권 실행에 대한 이의의 소)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담보권의 목적이 되는 재산 소재지의 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③ (생 략)	제30조(담보권 실행에 대한 이의의 소) ① (현행과 같음) ② ----------책임제한사건이 계속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에---------. ③ (현행과 같음)